##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076

발의연월일: 2021. 5. 12.

발 의 자:민병덕·홍성국·천준호

허 영ㆍ이용빈ㆍ이동주

아수진비 · 윤준병 · 이용선

이규민 · 조오섭 · 맹성규

송재호 · 장경태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호금융 조합과 대출 등을 받은 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조합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조합원에게 적극 고지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조합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더라도 제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상호금융 조합과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 합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 는 조합원에게 조합은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 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조합원의 금융편의를 도모 하고자 함(안 제45조의3 신설 등).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4절에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5조의3(금리인하 요구 등) ① 조합과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조합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 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중앙회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 등의 계약에 대해서는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본다.
- 제95조제4항 중 "제78조제1항제3호"를 "제45조의3, 제78조제1항제3호"로, "제78조제6항, 제83조"를 "제78조제6항·제7항, 제83조"로, "제96조"를 "제96조, 제101조(제1항제1호의3 위반에 한정한다)"로 한다.
- 제101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3. 제45조의3제2항 및 제78조제7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리인하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 및 제78조제7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45조의3(금리인하 요구 등) ①
	조합과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
	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
	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
	정되는 경우 조합에 금리인하
	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대출 등의 계약을 체
	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
	건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사업의 종류 등) ① ~ ⑥	제78조(사업의 종류 등) ① ~ ⑥
(생 략)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⑦ 중앙회의 조합원에 대한 대
	출 등의 계약에 대해서는 제45
	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
	합"은 "중앙회"로 본다.
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① ~ ③ (생 략)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조	4

합 및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제4항, 제39조제1항제1호·제6호,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78조제1항제3호(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검사·감독만 해당한다)·제5호, 제78조제6항,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84조, 제89조제3항및 제96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1조(과태료) ① 조합 또는 중 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의2. (생략) <신설>

2. ~ 7. (생략)

②·③ (생 략)

제45조의3, 제7
8조제1항제3호
<u>제78</u> 조제6항 · 제7항,
제83조
<u>제96조,</u>
제101조(제1항제1호의3 위반에
<u>한정한다)</u>
제101조(과태료) ①
1. · 1의2. (현행과 같음)
<u>1의3. 제45조의3제2항 및 제78</u>
조제7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2.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